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4호 2023. 9. 2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963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964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1965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96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967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968호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969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사천시 조례 제1970호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971호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972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사천시 조례 제1973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사천시 조례 제1974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사천시 조례 제1975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 ----- 37
○ 사천시 조례 제1976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사천시 조례 제1977호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사천시 조례 제1978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979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사천시 조례 제1980호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1981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사천시 조례 제1982호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55
○ 사천시 조례 제1983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사천시 조례 제1984호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60

○ 사천시 조례 제198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사천시 조례 제1986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	66
○ 사천시 조례 제1987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67
○ 사천시 조례 제1988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 사천시 조례 제1989호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70
○ 사천시 조례 제1990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 사천시 조례 제1991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78
○ 사천시 조례 제1992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	84
○ 사천시 고시 제2023-227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85
○ 사천시 고시 제2023-22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106
○ 사천시 고시 제2023-23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	108
○ 사천시 고시 제2023-231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11
○ 사천시 고시 제2023-232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시행계획(토목분야) 수립 고시 -	114
○ 사천시 고시 제2023-233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복항) 준공인가 고시 -----	116
○ 사천시 고시 제2023-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1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283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0
○ 사천시 공고 제2023-1285호	사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	144
○ 사천시 공고 제2023-128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4
○ 사천시 공고 제2023-1293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62
○ 사천시 공고 제2023-1295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 예고 -----	171
○ 사천시 공고 제2023-1304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7
○ 사천시 공고 제2023-1307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3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
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4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1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2항 중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각각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제5호, 같은 조 제9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의 제2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 같은 조 제14항의 제4항, 같은 조 제15항의 제3항, 같은 조 제16항의 제7항, 같은 조 제17항의 제2항, 같은 조 제18항의 제4항, 같은 조 제19항의 제4항 중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각각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5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제4조제1호 관련)

지원내용	상세내역
임신축하용품	○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 첫째 아: 1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둘째 아: 200만원 -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 셋째 아 이상: 8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24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36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48개월) 되었을 때: 15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출산축하용품	○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상품권을 포함한다) 지급
산후조리비	○ 제3조제8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출생아 복지보험료	○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	○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 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
우대인증	○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 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감면

지원내용	상세내역
결혼축하금 지원	<p>○ 제3조제9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당 100만원 지원</p> <p>가.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p> <p>나. 지원대상: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 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단, 6개월 미만시 연속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p> <p>다. 지원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 지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받는 자만 50만원 지급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p>라. 지원방법: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천사랑상품권을 부부 각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되 동의나 위임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타인에게 지급 가능</p>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성공 축하금	<p><input type="checkbox"/> 참여자 기념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p><input type="checkbox"/> 성공축하금</p> <p>○ 시 주관 동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참여자로서 제3조제10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생애 1회에 한하여 한 쌍당 100만원 이내의 사천사랑상품권 지원</p> <p>가. 신청기간: 미혼남녀 인연 행사로부터 2년 이내</p> <p>나.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9세~49세이하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일 것</p> <p>다. 지원특례: 부부중 혼인신고일 현재 사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나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생애 최초인 거주자만 50만원 지원</p>

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둘째 자녀(이름:)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시 1회당 100만원 지원 ※ 출생일 전후로 180일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 출산축하용품	[] 아기용품세트 [] 쓰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우대인증	가구원 성명()
	[]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 보험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보험료 지원기간(5년) 내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 자격 상실됨
	[] 유족기 대여	※ 당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문의
[] 수도요금 감면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 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BC7업, N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로 경감과 다자녀 전기로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로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로,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임금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임금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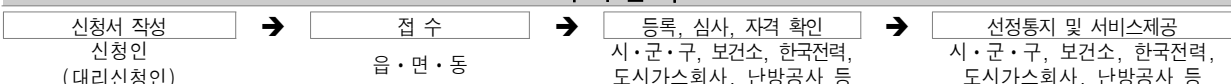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아수당(현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우대인증(제3조제6호 관련)

<h3>우 대 인 증</h3>		
성 명:		
(가족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사 천 시		

(가로 8.5cm × 세로 5.5cm)

(뒷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 내용··· <p>※ 우대인증 가족 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p> <p>※ 신분증과 함께 제시</p> <p>※ 중복할인 불가</p>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6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2조(「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3조(「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 이상 만”을 “6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5조(「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만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13세 이상 만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8조(「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0세 이상 만”을 “50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만 12세”를 각각 “12세”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만 13세”를 “13세”로, “만 3세(36개월) 이상 만”을 “3세(3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7세 이상 만”을 “7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의 개정)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75세”를 “75세”로 한다.

제15조(「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6조(「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20세”를 “20세”로 한다.

제17조(「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18조(「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3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9조(「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20조(「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9. 21.>

주민총회 정족수(제19조제2항 관련)

주민 수*	산출 기준 ¹⁾	기준 정족수 ²⁾		비고
		최소	최대	
5,000명 이하	2% 이상	50	80	□ 주민총회 정족수 산정 : 1)산출기준에 따른 숫자가 2)의 최소 정족수 이상, 최대 정족수 이하인 주민수
5,001 ~ 10,000명	1.5% 이상	80	120	
10,001 ~ 15,000명	1.2% 이상	120	150	
15,001명 이상	1% 이상	150	250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주민총회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사례1)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9,500명인 A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20명

- 산출내역 : 인구 9,500명 × 1.5% = 143명이나 총회 정족수 모집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0명 기준을 적용

(사례2)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5,100명인 B면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80명

- 산출내역 : 인구 5,100명 × 1.5% = 77명이나 총회 정당성 확보 및 하위구간 역전 방지를 위해 최소 80명 기준을 적용

(사례3) 총회 참석대상 주민등록 인구가 7,000명인 C동의 총회 최소 정족수

총회 최소 정족수 = 105명

- 산출내역 : 인구 7,000명 × 1.5% = 105명(산출기준¹⁾ 적용)

[별표 2] <개정 2023. 9. 21.>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7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8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계획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2. 심리치료 서비스
3. 취업 및 자기계발 서비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69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여성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회관”을 “사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탁운영자”란 제13조제1항 단서”를 ““수탁자”란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7조제1항제1호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0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스톡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톡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수사기관, 교육청, 관련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1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
3. 아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2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3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100분의 50 감경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수강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4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5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미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2. “미래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미래형 항공기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CT 융복합, 빅데이터, 자율주행, 수면비행선박,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하기로 한 분야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 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환경변화, 성장 전망
3.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4.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5.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기술활용, 창업,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행사, 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8.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등의 확보 방안

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등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3. 생산 제품의 사업화, 시장화, 판로개척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의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대학교수,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6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7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8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79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시가”를 “시 및 수탁자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3. 9. 21.>

회원제별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

○ 개인회원

구 분	연회비	혜 택
일반	3만원	·기획공연 1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골드	5만원	·기획공연 2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VIP	10만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4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청소년	5천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2매)

※ 개인회원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청소년 제외)

○ 공통 혜택

- 문화소식지, 공연 팸플릿 홍보물 무료 우편발송
- 모바일 공연·전시 정보 알리미(푸시 서비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0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사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 등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1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3. 9. 2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단체가 축구장(인조잔디 구장),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70% 이상이 사천시에 주소지를 둘 것)	5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2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향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사천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3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7조의 제목 “(자금의 전용금지)”를 “(자금의 전출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용”을 “전출”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4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협의를 위한 주민여론을 청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체계개발사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2. “비행시험”이란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의 성능 확인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비행을 말한다.
3. “소음영향지역”이란 한국형전투기 비행시험 시 소음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영향지역 주민의견 수렴
2.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 건의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항공기 소음 및 지원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 나. 개발사업 제작사 등에서 추천한 사람
 - 다. 항공기 소음 또는 갈등조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발주청 및 유관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기 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5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을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
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
관리법」을 준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제13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거목·더목”을 “거목, 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를 “경우로서 660제곱미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45조제16호가목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과 제5항”을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봉계지구, 정곡지구”를 “봉계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6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7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건설
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 중 “시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센터의”를 “신고센터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을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8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미생물발효재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미생물발효재단”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6조제1항 중 “재단에는”을 “재단의 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를 “이사 및 감사[사천시 (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이사·이사”를 “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을 “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89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 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스마트팜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90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두고 시에 있는”을 “두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91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1992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9. 21.>

공인의 규격(제6조 관련)

구 분		한 모서리의 길이
청 인	○ 사천시의회의 인	3.6cm
직 인	○ 사천시의회의장의 인	3.0cm
	○ 사천시의회○○○위원회위원장의 인	2.1cm
	○ 사천시의회사무국장의 인	2.1cm
	○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2.1cm
	○ 물품출납원 등	1.8cm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1.>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9. 21.>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	등 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또는 210mm×297mm(한지)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 2023-2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9. 21.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수리일자)	공 사 내 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2023-19 (2023.9.7.)	2023.09.07.~ 2038.09.06.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9-4, 205-9번지선	630 (직접)	2023-20 (2023.9.15.)	갯벌 생태체험 탐방로 설치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27호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번지 일원

다. 면 적 : 248,498㎡

라. 조성목적 : 서부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개발기간(변경)

○ 지정 - 2012. 09. 13 ~ 2022. 12. 31

○ 변경 - 2012. 09. 13 ~ 2024. 06. 30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바. 사업시행자

- 위탁자 : 주식회사 장원 대표이사 정형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로 14, 2층]
- 수탁자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사. 관리기관 :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아. 추진경위(추가)

- 2012. 09. 13.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2-152호)
- 2015. 03. 05.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5-28호)
- 2015. 07. 23.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5-98호)
- 2016. 06. 02.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120호)
- 2016. 12. 29.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268호)
- 2017. 07. 27.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7-133호)
- 2018. 07. 12.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고시(사천시 고시 제2018-120호)
- 2018. 12. 27.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268호)
- 2020. 01. 02.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1호)
- 2021. 01. 14.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 지형도면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22호)
- 2021. 05. 20.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135호)
- 2021. 12. 16.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374호)
- 2022. 01. 2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2-17호)
- 2022. 12. 22. :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2-282호)
- 2023. 08. 1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3-201호)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자. 입지여건 (변경)

시설명	현 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지방도 1002호선에서 접근가능	기정 : ~ 2022년 변경 : ~2024.06	•주진입도로 - 중로1-56호선 (L=235m, B=20m) - 소로1-2호선 (L=140m, B=10~20m)	사천시
		기정 : ~ 2022년 변경 : ~2024.06	•부진입도로(소로2-258호선) L=84m, B=8m	사업시행자
철 도	진주역(KTX) 이용	-	-	-
공 항	사천공항 이용 가능	-	-	-
용 수	-	기정 : ~ 2022년 변경 : ~2024.06	•계획 용수량 : 2,087m ³ /일 (축동산단 : 663m ³ /일) •배수지 용량 : V=1,200m ³)	사천시 사업시행자
전 력	-	기정 : ~ 2022년 변경 : ~2024.06	•9,015MWh/년	한국전력 공사
오·폐수 처리	-	기정 : ~ 2022년 변경 : ~2024.06	•계획오·폐수량 기정 : 197.8m ³ /일 변경 : 155.3m ³ /일 (산단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 입 후 처리)	사업시행자
폐기물 처 리	-	-	•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지정 폐기물 발생량 : 187.507톤/일	전문 처리업체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으로 협동화를 추진
- 기술개발 및 수출 산업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추진방향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입주대상 업종(추가)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부동산업(L6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L68112에 한함)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채무 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 ※ 산업단지 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2)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²,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비 고
248,498	158,006	4,205	86,287	
(100.0)	(63.6)	(1.7)	(34.7)	

2) 용도별 구역계획도 : 별첨 #1

3)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산업”에 따라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
-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공공시설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배치기준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을 집단화, 계열화 단지로 업종 배치
- 업종별 특성 및 주변지역 환경적 영향 고려하여 배치

2)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당초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계	-	158,006	100.0
제 조 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36,128	2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13,838	8.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10,495	6.6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58,299	36.8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52)	39,246	24.9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위 치
산업시설용지	158,006	100.0	-
계	58,825	37.2	BL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4,702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50,817	32.1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3,306	2.1	
계	74,848	47.4	BL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5,422	3.4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3,227	8.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56,199	35.6	BL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0,495	6.6	
계	13,838	8.8	BL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5,159	3.3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8,679	5.5	

3) 업종별 구역계획도 : 별첨 #2

마.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추가)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부동산업(L68-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L68112에 한함)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서 시행하는 임대사업은 허용함)
- ※ 산업단지내 전체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가능(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제한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중 다음의 업종 입주불허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시멘트, 플라스터제품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제조업(C23994)
-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배출사업장은 입주불허
- 지원시설용지내 어린이집, 병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입주불허
- 관리기관은 공해다발, 용수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4) 입주 우선순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의 규정에 따른다.

5) 입주절차

-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 계약 체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바.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설치계획

구 분	시설명	면 적(m ²)	비 고
	합 계	86,283	
공공시설	도로	34,479	7개노선
	배수지	1,824	1개소
	저류지	5,850	1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550	1개소
	주차장1	2,070	
	주차장2	1,000	
	공원	3,943	소공원 2개소
	완충녹지	35,567	3개소

사.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①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함
- 산업용지의 처분 및 분할에 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름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은 같은 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 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 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공단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공단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 ② 환경관리
- 인·허가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서류 검토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환경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및 재해 복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I-1	12,294	12,294	I-1	I-1	1,000	1,000	주차장㉓		
-	I-2			I-2	I-2	2,070	2,070	주차장㉔		
-	I-3			I-3	I-3	1,550	1,550	폐수종말처리시설㉕		
-	I-4			I-4	I-4	5,850	5,850	저류시설㉖		
-	I-5			I-5	I-5	1,824	1,824	배수시설㉗		
-	II-BL1	158,006	158,006	II-BL1-1	II-BL1-1	11,978	11,978			
	II-BL1-2			II-BL1-2	4,651	4,651				
	II-BL1-3			II-BL1-3	6,204	6,204				
	II-BL1-4			II-BL1-4	16,413	16,413				
	II-BL1-5			II-BL1-5	19,579	19,579				
	II-BL2-1			II-BL2-1	10,311	52,893				
	II-BL2-2			II-BL2-2	9,195	6,556				
	II-BL2-3			II-BL2-3	8,581	2,708				
	II-BL2-4			II-BL2-4	4,369	1,653				
	II-BL2-5			II-BL2-5	3,153	1,653				
	II-BL2-6			II-BL2-6	2,269	2,714				
	II-BL2-7			II-BL2-7	2,336	6,671				
	II-BL2-8			II-BL2-8	3,201	-				
	II-BL2-9			II-BL2-9	4,599	-				
	II-BL2-10			II-BL2-10	7,620	-				
	II-BL2-11			II-BL2-11	8,705	-				
	II-BL2-12			II-BL2-12	10,509	-				
-	II-BL3					II-BL3-1	II-BL3-1	8,840	10,495	
						II-BL3-2	II-BL3-2	1,655	-	
-	II-BL4					II-BL4-1	II-BL4-1	2,745	2,512	
				II-BL4-2	II-BL4-2	2,280	2,647			
				II-BL4-3	II-BL4-3	8,813	8,679			
-	III	4,205	4,205	III	III	4,205	4,205			
-	IV-1-1	39,464	39,464	IV-1-1	IV-1-1	15,523	15,523	완충녹지㉘		
-	IV-1-2			IV-1-2	IV-1-2	4,963	4,963	완충녹지㉙		
-	IV-1-3			IV-1-3	IV-1-3	15,158	15,158	완충녹지㉚		
-	IV-2-1			IV-2-1	IV-2-1	2,253	2,253	공원㉛		
-	IV-2-2			IV-2-2	IV-2-2	1,690	1,690	공원㉜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1 II-BL1-2 II-BL1-3 II-BL1-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1-5 II-BL2-1 II-BL2-2 II-BL2-11 II-BL2-1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2-3 II-BL2-4 II-BL2-5 II-BL2-6 II-BL2-7 II-BL2-8 II-BL2-9 II-BL2-10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3-1 II-BL3-2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4-1 II-BL4-2 II-BL4-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1 I -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1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창고 및 운송관련업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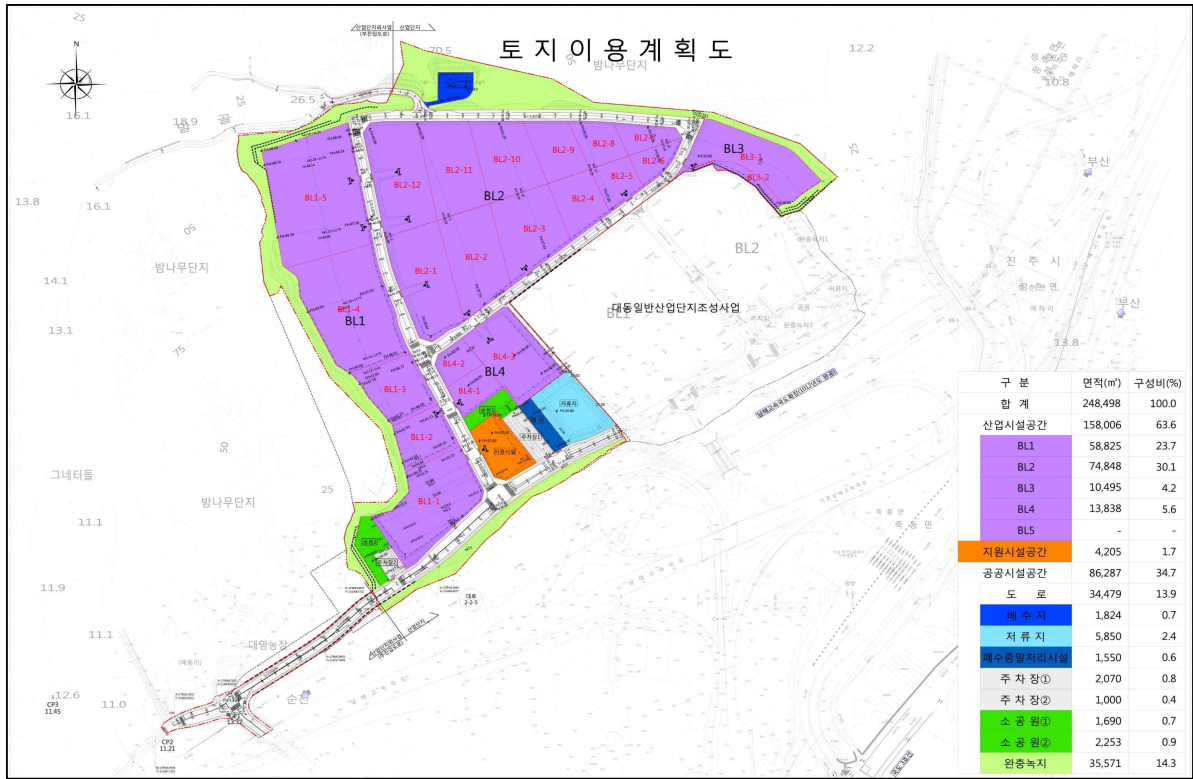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BL3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1)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제조업(C2332) • 석면, 암면 및 유사 제품제조업(C23994)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I-BL4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 • 부동산업 • 태양에너지발전업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부동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한함)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지붕 및 주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I-1 I-2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 태양에너지발전업(D35114)
		권장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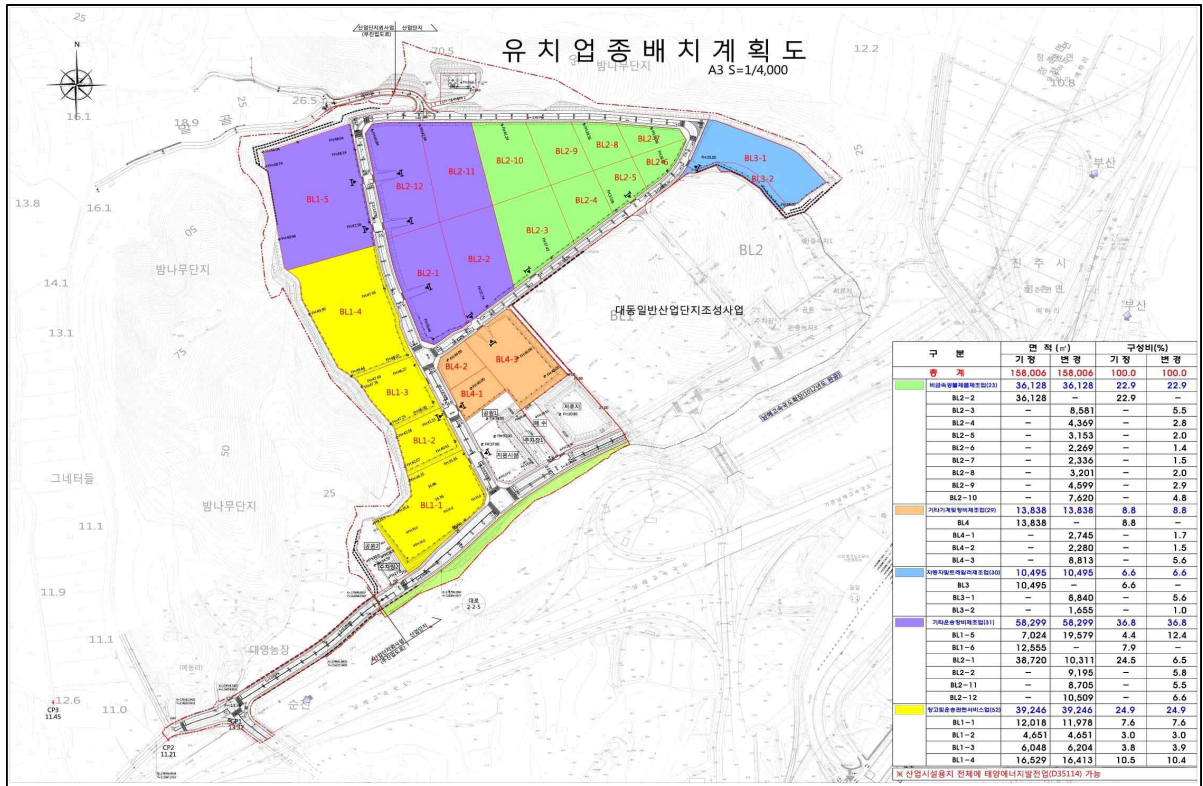
※ 별첨 1 : 용도별 구역평면도(토지이용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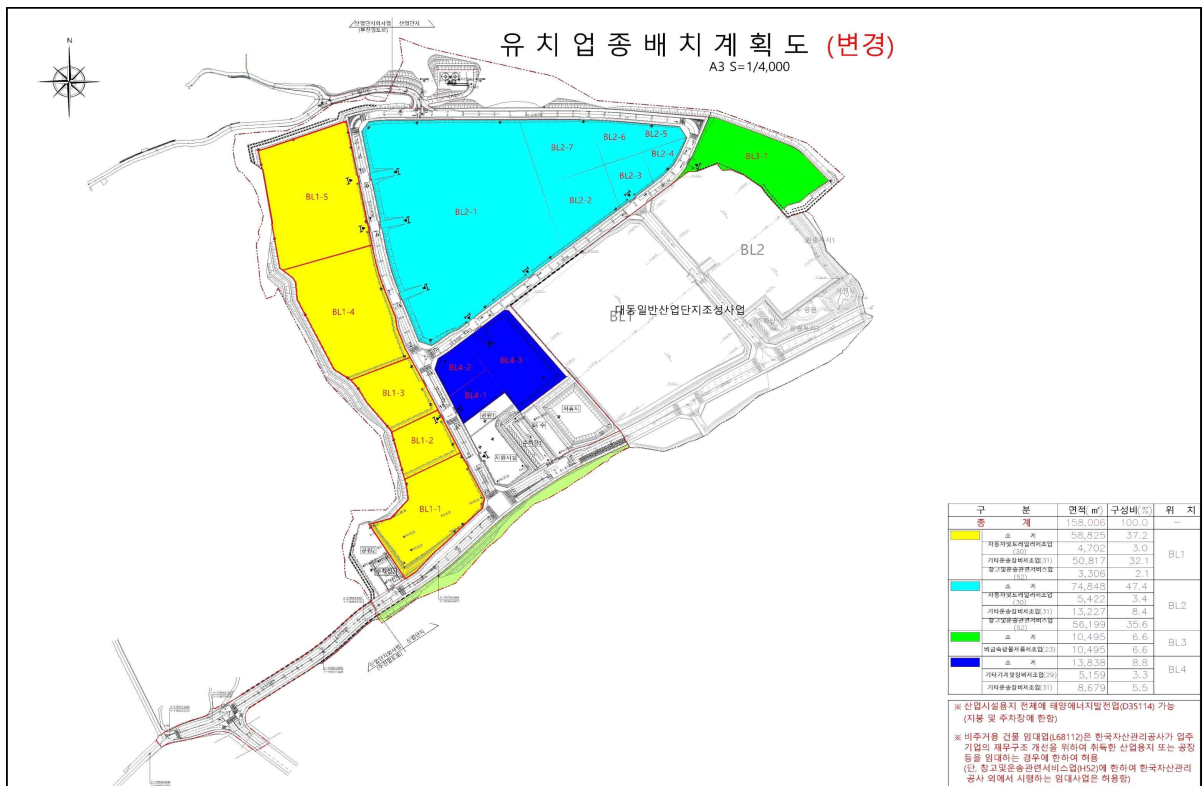
(변경)



※ 별첨 2 : 업종별배치 계획도
(기정)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2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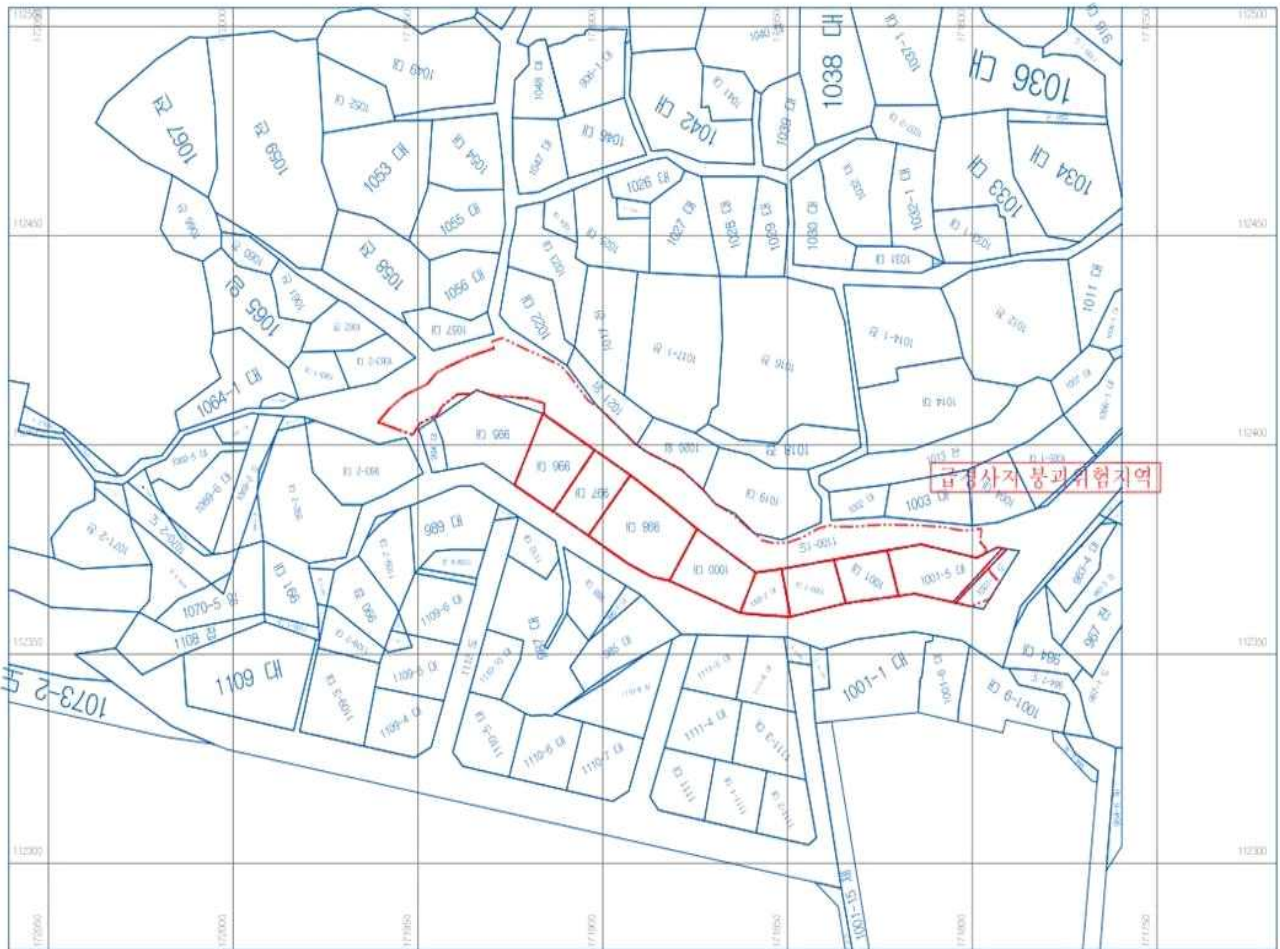
지역명	위 치	유형	면적 (㎡)	재해위험도 등급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정비 전	정비 후		
선진공원2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01-5번지 일원	붕괴 위험	4,228	D	B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소 해소	'16.12.2.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2023. 9. 21.

3.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도면(선진공원2)

S = 1 : 1,000 (A3)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3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291호(2022년12월21일)로 최초 기본계획 수립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2.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일원
3. 계획의 범위 : 431.5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다평리 어촌마을 주민들의 노후화된 거주 및 어항환경 개선
 -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류형 해안관광 특화방안 마련
 -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간)

○ 총사업비 : 6,275백만원

- 국비 4,393백만원, 도비 565백만원, 시비 1,317백만원

○ 사업계획의 개요

- 공통사업 : 방과제 신설

- 특화사업 : 어장 진입교량 설치, 갯섬 힐링존 조성, 다맥마을회관 리모델링

7. 부문별 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계획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비고
① 공통사업	방과제 신설	1,974	
	소계	1,974	
② 특화사업	어장진입교량 설치	2,374	
	갯섬 힐링존 조성	270	
	다맥마을회관 리모델링	139	
	소계	2,783	
③ S/W사업	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경영지원	235	
④ 사업지원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감리비 포함)	1,283	
합계(①+②+③+④)		6,275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8.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Tel : 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갯섬항)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서포	다평	1284	대지	750	750	개인(다맥어촌계)	갯섬 힐링존 조성
2	서포	다평	1371	잡	462	462	개인(다맥마을)	다맥마을회관 리모델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31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갯섬항)
2.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일원
3. 계획의 범위 : 431.5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다평리 어촌마을 주민들의 노후화된 거주 및 어항환경 개선
 -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류형 해안관광 특화방안 마련
 -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간)
- 총사업비 : 6,275백만원
 - 국비 4,393백만원, 도비 565백만원, 시비 1,317백만원
- 사업계획의 개요
 - 공동사업 : 방파제 신설
 - 특화사업 : 어장 진입교량 설치, 갯섬 힐링존 조성, 다막마을회관 리모델링

7. 부문별 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계획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비고
① 공동사업	방파제 신설	1,974	
	소계	1,974	
② 특화사업	어장진입교량 설치	2,374	
	갯섬 힐링존 조성	270	
	다막마을회관 리모델링	139	
	소계	2,783	
③ S/W사업	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경영지원	235	
④ 사업지원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감리비 포함)	1,283	
합계(①+②+③+④)		6,275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8.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Tel : 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갯섬향)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서포	다평	1284	대지	750	750	개인(다맥어촌계)	갯섬 힐링존 조성
2	서포	다평	1371	잡	462	462	개인(다맥마을)	다맥마을회관 리모델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32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시행계획(토목분야) 수립 고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토목분야)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구우진항)
2.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일원
3. 계획의 범위 : 115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자혜리 어촌마을 주민들의 노후화된 거주 및 어항환경 개선
 -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한 체류형 해안관광 특화방안 마련
 -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해양수산과)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3년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국비 7,000백만원, 도비 900백만원, 시비 2,100백만원
- 1차 승인사업비 : 7,742백만원
 - 국비 5,419백만원, 도비 697백만원, 시비 1,626백만원
- 사업계획의 개요
 - 공통사업 : 방과제 조성, 도로안전 및 어항정비, 부잔교설치
 - 특화사업 : 구우진 통합알리미 설치, 정주어항 야간조명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시행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Tel : 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구우진항)

일 련 번 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 면	동· 리						
1	서포	자혜	산23-2 0	도	27,767	5	경상남도	통합알리미
2	서포	자혜	20-4	도	2,827	350	국(국토교통부)	교행도로안전 및 어항보강정비
3	서포	자혜	20-2	임	990	100	국(기획재정부)	
4	서포	자혜	23-1	도	1,516	6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33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준공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176(2022.08.25.)호로 시행계획수립 고시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4,849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주요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합 계			14,849	
공 통 사 업			10,786	
	광포항 부잔교 확충	폭 5.2m, 연장 60m	327	
	영북항 다목적방파제	연장 100m(경사제 25m, 직립제 75m)	2,821	
	영북항 주차장	면적 691.6㎡	51	
	영북항 안전휀스	메쉬형 울타리 98m	6	
	산분령항 주차장	잔교식(폭 14m, 연장51.5m)	1,882	
	실안항 물양장 조성	잔교식(폭 15m, 연장51.0m)	2,430	
	실안항 방파제 확충	중고 232m, 신설 30m	2,354	
	실안항 계류장	폭 3.2m, 연장 65m	397	
	실안항 어구보관창고	면적 273㎡	524	
특 화 사 업			1,074	
	산분령항 다목적회관	면적 199㎡	1,074	
	산분령항 해상좌대낚시터		-	
지역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기타 등	1,072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관리비 등	1,911	

5. 사업시행자: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6. 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 수 일: 2019년 1월 1일

○ 준 공 일: 2023년 9월 20일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7.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기 타

영북항 어촌뉴딜300사업 실시설계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6)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고시 제2023-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사천시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하천명			죽천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97번지		
	면 적	영구 15m ³ , 일시 112m ²		
	기 간	영구		
	목적 및 개요	경남항공국가산단 오·폐수처리시설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압송관로 D200, 60m)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83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보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제명 수정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 및 보완(안 제7조~제13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7,

FAX : 831-6036)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보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제명 수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수정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현행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외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총 7개 유형에 대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추가 및 보완 (안 제7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에서의”를 “내”로 한다.

제2조 중 “안”을 “내”로,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일위험지구”를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이란”을 ““건축물”이란”으로, “공작물중”을 “공작물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침수위험지구 등”이란”을 ““침수위험지구”란”으로, “침수 및 유실”을 “침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를 “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중전의 제8호) 중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안”을 “내”로 한다.

제5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7조의 제목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수 및 유실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로, “침수 피해”를 “피해”로,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 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 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 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u>안에서의</u>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u>안에서</u>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u>주민의</u>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내</u> ----- ----- ----- -----.</p> <p>제2조(기본방향) ----- -- <u>내</u>----- ----- ----- - <u>시민</u>----- ----- -----.</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 ----- -----</p>

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생략)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5. (생략)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

2. (현행과 같음)

3. -----

----- “건축물”
이란 -----
----- 공
작물 중 -----

----- 그 밖의 -----
-----.

4. 5. (현행과 같음)

6. “침수위험지구”란 -----

----- 침수 -----

-----.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시 하천 수위

<신 설>

<신 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 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

-----.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

<신 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

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3.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내 -----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 내 -----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 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

②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

1. ~ 3. (현행과 같음)
4. 침수위험지구에서-----
피해-----토
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

<신 설>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
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 설>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
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
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
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
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
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
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생략)

<신설>

<신 설>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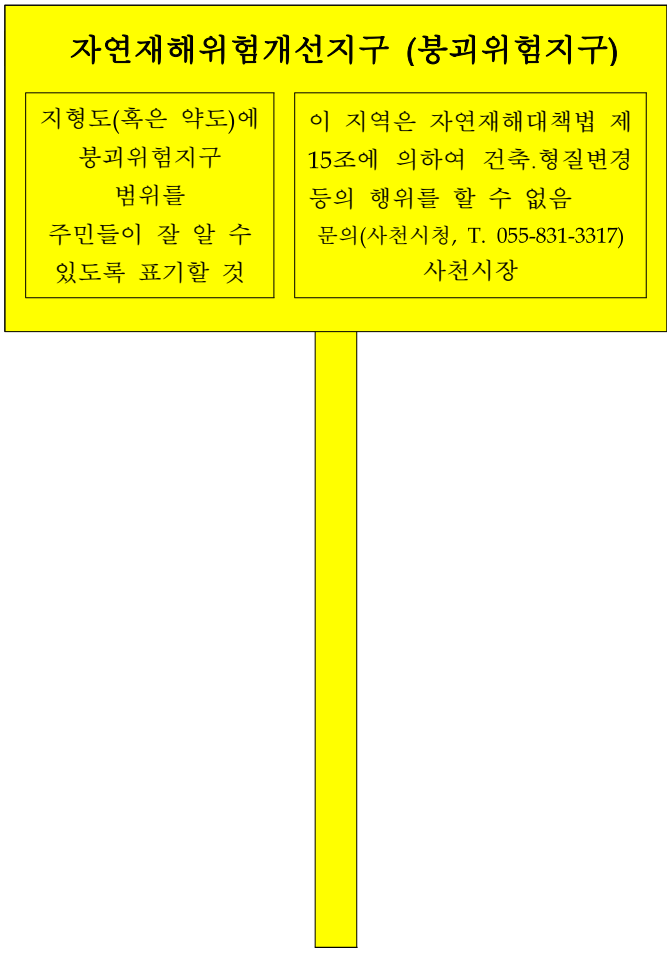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yellow;">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청</td> </tr> </table> </div> <div style="margin-top: 20px;"> </div>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청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width: 45%;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청</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85호

사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 분양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입주신청 및 용지매매 계약 체결기간 내 미신청(계약)시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므로 일정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단지 개요

- 가. 단 지 명: 사천 향촌2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경남 사천시 사등동 270번지 일원
- 다. 조성면적: 68,661㎡(산업시설 용지 43,279.6㎡)
- 라. 준공일자: 2021년 12월 30일(공사 준공: 2020년 11월 12일)
- 마.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2.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방법

소재지	분양용도	필지	면적(㎡)	예정가격(원)	분양방법(비고)
경남 사천시 사등동 270번지 일원	산업시설 용지	일괄 (6필지)	43,279.6	19,668,368,640 (454,449원/㎡)	경쟁입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한계선 2m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조선시설용지로서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 (2021.12.30.)부터 10년 이내 매립 목적 변경 불가

※ 분양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게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선소·선박수리장·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분양대상자의 자격 요건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38조(입주계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조선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 입주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4.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가. 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 선정(정해진 기간 내 입찰 및 입찰서를 제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후 **관리기관(사천시)의 입주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최종 입주대상자로 결정**
- 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 또는 용지매매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사천시로 귀속됩니다.**
 단, 입주신청 후 관리기관의 입주심의에서 불승인 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환불합니다.
- 다. 차 순위 자가 있을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5. 입찰,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구 분	기 간	장 소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3. 9. 21.(목) 09:00 ~ 11. 3.(금) 17:00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	2023. 11. 6.(월) 10:00	
입주계약신청	2023. 11. 8.(수)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
입주계약심사	2023. 11. 9.(목) ~ 11. 10.(금)	
대상자 선정통보	2023. 11. 13.(월)	개별 우편 통지
입주계약체결	2023. 11. 15.(수)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가. 입주신청,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 나. 입주신청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055-831-3465)**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 입주업체 심의 및 선정 시 신청업체에 심사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주 또는 분양신청 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안내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는 인터넷을이용, 토지를 매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 상기 일정은 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개찰결과는 온비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홈페이지 분양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신청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신청방법

- 1)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의 전자입찰(경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2) **신청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일괄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분 필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3) 신청 관련 법령, 공고 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분양신청

- 1) 분양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경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① 온비드 회원가입 → ② 공동인증서 등록 → ③ 입찰 대상물건 검색 → ④ 입찰정보 확인 및 준수규칙 동의 → ⑤ 입찰서 작성·제출 → ⑥ 입찰보증금 납부 → ⑦ 납부 완료여부 확인 → ⑧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 2)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 등록 시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선임계(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3)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 방식으로 공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4) 공동 신청(개인, 법인)은 해당 필지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 상 불가)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 처리하고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성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공동명義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분양신청과 계약 시 명의를 동일하여야 하며, 온비드 상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방법

- 1)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개찰일시[2023. 11. 6.(월) 10:00]에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 2) 1인 입찰이라도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이며, 낙찰된 금액과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입찰보증금: 입찰할 금액의 5%】

예시) 예정가격 19,668,368,640원, 입찰금액 20,000,000,000원 경우 → 입찰보증금은 입찰 예정금액(20,000,000,000)의 5%인 1,000,000,0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 입찰서 제출 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에서 분할납부 가능할 시 마감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 되거나 납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예약금 납부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마.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합니다.(단,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바.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 시 부족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및 온비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사천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8. 제출서류 및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입주심사 신청 시	① 입주심사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② 환경성 검토요구서(서식3)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⑤ 공장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추가 지참
입주계약 체결 시	① 계약금 입금(매매대금의 10%) 후 입금증 사본 제출 1부. ② 종람확인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입주계약 신청서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사천시가 입주계약 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의 보완 및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양식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 과 공공산단조성팀)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1)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사천시에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천시에서 입주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계약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3) 대상자가 입주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4) 대상자는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 전환 또는 법인 분할, 합병 등의 명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이나 입주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에 부정이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9. 대금납부 방법

가.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납 부 시 기	계약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 부 비 율	10%	40%	50%	
납 부 계 좌	농협은행: 839-01-012561 , 예금주: 사천시징수관			

나. 연체료 징수

- 1) 중도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2) 잔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지연기간		이 자 율	비 고
1	약정일 익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4	6개월 이상	연 15%	

10. 기 타

가.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 1) 토지사용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 2) 잔금 납부 또는 토지사용 승낙 이후의 관리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3)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4) 최종 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대금을 완납하거나,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 승낙일, 소유권 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조성시설용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이 매립지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조성시설용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나. 처분제한 및 입주계약 해지

- 1) 금회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이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사천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2)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 3)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입주계약서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입주계약 해지 시 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계약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 5) 입주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건축물 철거비용, 등기료 등 일체)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금회 분양용지는 향후 관계 기관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시기가 지연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계획(변경포함) 승인내용,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규·지침·고시 등의 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3)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의한 통행 안전대책 수립연구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와이어로프 방식 선가대 운용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4) 입주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이전신고(사천시↔사용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점용료·사용료납부)**, 원상회복 복구 계획서 및 예치금(보증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해양항만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5) 매수인은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의 조성 현황(형상, 고저, 경사, 법면 상태, 토질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혐오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인하는 조건 및 향후 건축에 필요한 성토, 절토,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도면과 현황의 상이, 토질 및 지하구조물, 폐기물(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 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시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6) 불가피하게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분양면적에 사면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 필요시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된 내용 이외의 관련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등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농도 기준을 확인하여 공장 가동 시 기준농도 이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수처리비용은 오염물질 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제 반 관계 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합니다.
- 10)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1)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12) 통신, 가스,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13) 사천시는 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등에 따라야 합니다.
- 15) 기타 관계도서 열람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055-831-3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055)831-346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2023. 9. 21.



사 천 시
[투자유치산단과]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86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능률 증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단체 보험 및 건강검진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 지원내용을 명확화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후단)
- 나. 조문 체계 정비(안 제6조)
- 다. 축하 및 격려 관련 지원 내용 수정(안 제7조제3호)
- 라. 저출산 극복에 관한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0호)
- 마.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4호)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1,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원 능률 증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 지원 내용을 명확화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후단)

나. 조문 체계 정비(안 제6조)

다. 축하 및 격려 관련 지원 내용 수정(안 제7조제3호)

라. 저출산 극복에 관한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0호)

마. 다자녀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내용 삭제(안 제7조제14호)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93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사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 다.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마.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바.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사천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마.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95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및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나.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개)정 이유

가.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개정 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령 및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나.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와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 1)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제5조)
- 2) 적극행정 정의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조항 명문화(안 제6조)
- 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의무화(안 제7조)

나.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1) 규칙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2)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안 제4조)
- 3)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4)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5)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5조, 제16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1,

FAX: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 법령 및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4조, 제5조)
- 나. 적극행정 정의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조항 명문화(안 제6조)
-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의무화(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의무화와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안 제4조)
-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및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마. 지원의 취소 및 변호인 보수의 반환(안 제15조, 제16조)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천시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제5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 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 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참 고 자 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frac{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frac{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frac{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frac{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frac{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frac{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frac{0.5}{100}$]	0.5%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04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수노인을 예우하는 문화정착과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안 제명)

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53,

FAX : 831-6023)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장수노인을 예우하는 문화정착과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안 제명)

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지원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 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

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 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사천시 전입일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신청내용						
<p>『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사천시장 귀하</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p>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_____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_____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입자 신분증

관 련 법 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공고 제2023-1307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되어 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1.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2 FAX : 831-6034)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되어 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4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 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